

#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

[시행 2024.1.1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3-271호, 2023.12.26, 일부개정]

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“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”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.
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	81.2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93.6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96.0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98.8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158.7원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회귀·필수의약품센터	99.3원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93.5원

## 부 칙

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